
		<h1>보도자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7. 11. 22.(수) 총 7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 과장 이정기, 사무관 김병채, 주무관 곽태훈 • ☎ (044) 201-3586, 3582	
보도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땅속 안전 지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내년부터 20미터 이상 굴착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미터(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지하 10~20미터(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 이러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11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붙임 참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7. 11. 제정) 별표8

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장비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줄자(5미터(m), 50미터(m))	각 1개 이상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병채 사무관(☎ 044-201-35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 제출서류

-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관련서류 1
 - ②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 관련서류 2~3
 - ④ ③에서 제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
 - ⑤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
 - 법인
 -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
 -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개인
 -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관련서류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신규등록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 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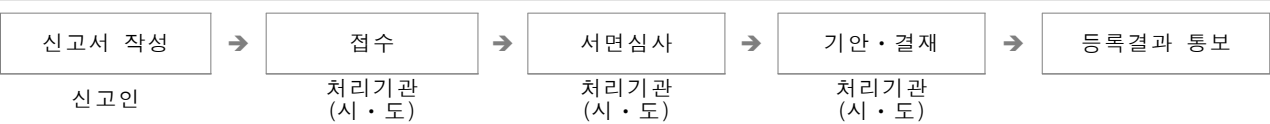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 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p style="font-size: small;">*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p>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기술등급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기간	구입 및 폐기 연월일	보관장소	비고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을 적습니다.

참고 2

지자체별 접수방법 및 접수처

연번	시·도	접수방법	접수처			접수 일정
			주소	담당자/연락처	e-mail/Fax	
1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방문접수	부산광역시청 연제구 중앙대로1001 (연산동) 23층 도로계획과	서태완/ 051-888-2736	s7t7w7@korea.kr /051-888-2729	11.23~
2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방문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7층) 안전관리과	현병철/ 053-803-5941	hyunbc@daegu.go.kr /053-803-5939	11.23~
3	광주광역시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김보배/ 062-613-2685	360kbb02@korea.kr /062-613-2689	11.23~
4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Fax 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건설도로과	박남철/ 042-270-5912	pnc016@korea.kr /042-270-5889	11.23~
5	강원도	담당부서 방문접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안전총괄과 (신관 4층)	김택수/ 033-249-3826	starmoning@ korea.kr /033-249-4055	11.23~
6	충청남도	담당부서 방문접수	충청남도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이성남/ 041-635-4604	lsn1129@korea.kr /041-635-3068	11.23~
7	전라북도	민원실 방문접수 후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김병철/ 063-280-4277	starione7@korea.kr /063-280-3419	11.23~
8	전라남도	담당부서 방문접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김상진/ 061-286-3022	etoile0108@korea.kr /061-286-4737	11.23~
9	경상북도	민원실 방문접수 및 민원실 우편접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김향숙/ 054-880-2895	-/(054)880-2349	11.23~
10	경상남도	담당부서 방문접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박화영/ 055-211-2734	queenphy@korea.kr /055-211-2719	11.23~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지하안전법」 시행(18.1.1.) 후 접수 실시 예정